

# EU 환경규제 동향

## REACH 관련 EU 업계의 논의 동향

### 유럽화학청, REACH 사전 등록 화학물질 리스트 공표

유럽화학청(ECHA)이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 System ; 유럽 화학물질 등록관리 제도) 사전 등록기간 중 등록된 15만개의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표했다. 이 기간 동안 등록된 건수는 약 275만개로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는 이 중 사전등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EU 역외 기업이 사전 등록한 것을 제외한 것이다. 유럽화학청은 이 15만개 물질의 중복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2009년 말 최종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통해 데이터 교환하면서 본 등록 준비해야 하는 시점

이번 리스트가 발표됨에 따라 REACH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등록된 화학물질을 EU 내에서 제조하거나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온라인상의 무대인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면서 향후 진행될 본 등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REACH 관련 업계 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 EU 유통업계의 REACH 관련 움직임

REACH 규정에 의하면 유통업체들은 특히 위험성 높은 유독물질에 대해 고객이 요청할 경우 45일 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제조업체는 위험성 높은 유독성 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NGO의 불매운동 타깃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소매업체나 주요 브랜드 유통업체들은 대체물질이 있고, 대체물질이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EU 유통업계는 10월에 유럽 화학청이 발표한 15개의 위험성 높은 유독물질 이외에도, NGO가 시장에서 철수를 주장하는 300개 물질 리스트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대체물질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유럽 유통업계의 입장에 따라 REACH 규정상 EU 시장 판매가 금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 높은 유독물질의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 제조업체도 유럽 유통업계의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 물질 DB와 관련, 화학 산업과 다른 산업 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

유럽 화학 산업 협회는 이미 자동차산업계와 협력해 완성차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글로벌 DB (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를 구축 중이며, 의료가 기 제조업체도 지난 2008년 10월 이와 비슷한 협력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또한, 독일 소매협회인 HDE는 독일 DIY 소매협회(BHB) 및 유럽 소매협회인 EDRA

와 협력해 REACH 솔루션이라는 이름하에 화학물질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별로 구축된 물질 DB는 향후 우리 업계의 대EU 수출에도 원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DB 구축 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최소한 물질 분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REACH에 대한 우리 업계 관심 절실

REACH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8년 11월 10일 미국 전자산업 협회는 전자산업에 대한 REACH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등록과 본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REACH의 전자산업에 대한 영향이 EU의 폐가전지침 중 하나인 유독성물질 함유 금지 지침(RoHS)보다 클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부 기업은 이번 기회를 기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여, 공급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1999년 영국과 독일 소비자 기업 간 합병으로 설립된 가정용 세제·헬스케어제품·개인용품 제조업체인 Reckitt Benckiser는 사용하는 원재료의 공급자를 접촉해 원재료에 대한 정보 입수에 나선 상태이다. 이 회사는 공급자들을 물질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자사와의 관계 정도를 분석, 공급업체별 DB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 기초해 향후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가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DB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REACH를 포함한 각종 환경관련 규정의 준수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기도 하다.

전구 유형별 판매 금지일정

전구 유형	적용시기	판매 허용 요건
비 투명성 램프	2009.9	백열등, 형광등에 적용 에너지효율성 A 등급
투명성 램프		
• 백열등(100W 이상)	2009.9	100W는 C 등급, 100W 이상은 E 등급
• 백열등(75W 이상)	2010.9	C 등급
• 백열등(60W 이상)	2011.9	C 등급
• 백열등(기타)	2012.9	C 등급
모든 투명/비 투명 램프	2016.9	비 투명성은 A, 투명성은 B 등급 이상만 판매 가능

## EU, 백열등 판매 금지 법규 도입

### 2009년 3월 18일 공식 채택

EU 집행위가 유럽 내 백열등(incandescent bulbs) 판매를 2009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2012년에는 완전히 금지하는 법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 10월 EU 이사회가 집행위에 대해 2012년까지 모든 백열등과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전구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제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판매금지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구이며, 백열등, 할로겐램프, 형광등(fluorescent lamp) 별로 각각 최소 에너지 소비량을 포함한 준수요건이 정해지게 된다. 가정용 전구 중에서도 비방향성(non-directional) 전구만이 대상이며, 반사판 등과 같은 방향성 전구는 2009년에 새로 별도의 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 하에 이번 법규 제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특수 램프 배출 할당량(cap)을 가진 할로겐램프도 아직까지 에너지효율성 등급 C 등급 이상인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번 제안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백열등 판매 금지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긍정적 역할 기대

전기 전자제품의 전 수명 주기 동안 보다 환경 친화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에코 디자인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동 조치에 대해 에코디자인 규제 위원회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는 동 조치가 연간 1천 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가정 당 연간 25 유로에서 50유로의 전기세를 아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열등의 대체전구로 밝아진 LED 전구 시장**

EU의 백열등 퇴출 조치로 EU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환경 오염도나 인체 유해성이 낮은 이상적인 대체 전구로 LED 전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높은 가격 문제만 빼면 가장 이상적인 미래형 대체 전구로서 손색이 없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불황기에 접어든 경제를 부양하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대체 상품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금까지 유보적이던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들도 LED 전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업체는 LED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필립스는 중국에서 LED 전구를 생산하면서, LED 전구의 가장 큰 단점인 가격 수준을 낮춘 가정용 LED 전구를 올 여름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등의 전구 업체를 인수 합병하고, 전구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의 5.2%를 LED R&D에 투자하고 있다. 오스람은 LED 전문 제조업체를 인수, 산업용 및 옥외용 LED 전등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는 수면 및 작업 효율을 증대해주는 기능성 LED 전등을 개발해 가정 및 직장용 LED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EU, 전구 및 세제 5개 품목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 적용기간 연장**

품목 명	당초 종료시한	연장된 시한
전구 (single-ended light bulbs)	2009.2.8	2010.4.30
식기세척기용 세제 (detergent for dishwashers)	2008.12.31	2010.12.31
손 설거지용 식기세제	2008.12.31	2010.12.31
다목적 청소세제 및 위생시설 청소세제 (all-purpose cleaners and cleaners for sanitary facilities)	2008.12.31	2010.12.31
윤활유 (lubricants)	2009.5.31	2010.7.31

금년 중 시효가 만료되는 5개 품목(전구, 세제)에 대한 에코라벨 부여 기준이 변경 없이 그대로 최대 2010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한이 연장된 5개 품목은 전구, 형광등,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 설거지용 식기세제, 다목적 청소세제 등으로 품목별 당초 종료시한과 연장된 시한은 좌측과 같다.

EU는 그간 EU의 환경마크인 에코라벨 대상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데, 현재 에코라벨 기준이 적용되고 있거나 기준을 제정중인 품목은 좌측과 같다.

<b>기준 제정품목</b>	다목적용 세제 및 위생시설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 설거지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세척기, 전구, PC, 노트북, 냉장고, TV, 진공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편, 신발, 관광 사이트 서비스, 관광시설서비스, 형광등
----------------	--

벨 기준이 적용되고 있거나 기준을 제정중인 품목은 좌측과 같다.

**3년간 10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제정할 계획**

EU 집행위는 향후 3년간 환풍기, 냉장기기, 커피포트와 같은 식품조제기 등 10개 전자 제품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는 지난 2005년 7월 채택한 Eco-디자인 지침으로, 이 지침은 대상 품목별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성 등

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EU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EU 역 내외산을 불문하고 정해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 기준이다.

이미 EU는 에너지효율성 기준 제정 대상품목으로 19개 품목 군을 1차 제시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기준을 제정 중인데, 이번에 발표된 10개 품목이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된 10개 품목 군에 대해서는 2009~2011년 동안 세부 품목별로 에너지효율성 기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기준 자체를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추가되는 10개 품목군	대상품목 예
에어컨 및 환풍 시스템	대형 에어컨, 환풍기
전기 및 화석연료 히팅(heating)장비	electric storage heating radiators, 히트펌프, 전기히터
식품조제기기	전기/가스/전자 오븐, 그릴, 커피머신
산업용 및 실험실용 오븐과 furnace	-
기계공구	-
네트워크, 데이터처리기기, 데이터 저장기기	IT서버, 네트워크통신장비
냉장기기 및 냉동기기	냉장기기, 얼음제조기기, 아이스크림 및 밀크셰이크기기
음성 및 영상기기	DVD/비디오 플레이어 및 녹음기, 비디오프로젝트, 비디오게임콘솔, 홈시어터용 디지털확성기
트랜스포머	-
물 사용기기	물청소기, 경작기기

**항공부문, 2012년 1월 1일부터 EU ETS 편입**

EU는 2008년 10월 항공부문의 EU 배출권 거래 시장(EU ETS) 편입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EU 공항에 도착하거나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배분받게 된다. 할당량은 2004~2006년 사이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97~95% 수준이 될 계획인데, 이 중 15%는 유상화될 전망이다. ETS의 규제에 따라 항공부문은 탄소 배출량을 2004~2006년 사이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2까지 3%, 2013년부터는 5%까지 감축해야 한다.

**2,700개 이상의 항공사, EU 탄소 규제 직면**

항공 부문의 EU ETS 편입으로 EU는 2,700 개 이상의 항공사가 동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4개월간 243대 이하로 운항하거나 탄소배출량이 연평균 10,000톤 이하인 경우에는 동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이는 매일 운항 기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동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제 항공협회, 반대 의사 표명**

EU의 조치에 대해 국제 항공협회(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총회는 상호 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이 동 조치에 대해 공동 대응 중이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